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 | |
|---|----------------|-------------|----|
|  | 보 도 자 료 | | |
| | 보도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 |

| | | |
|------|---------|---------------------------------------|
|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김경영 부국장(3145-8129), 권순표 수석(3145-8526) |
|------|---------|---------------------------------------|

제 목 :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 | |
|------------------------|---|
| ■ 소비자경보 2018-5호 | |
| 등급 | 주의 경고 위험 |
| 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1 개 요

-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

* '18.8.6.~8.8. 기간중 8건의 신고·상담 접수

-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8.13.까지 오라는 내용

※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

⇒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 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유의사항

- **(이메일 삭제)**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

- **(신분증 및 통장 등 제공 금지)**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이스피싱에 유의)**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 (예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 등

- **(금감원에 신고)**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음

(붙임)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 이메일 내용

☆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보낸 사람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 manager@fss.or.kr >
받는 사람 < @naver.com >

일반 첨부파일 1개 (32KB) 모두 저장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32KB

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1. 성명
2. 번호 10-
3. 고발인이 귀하를 유사수신행위 위법자로 고발한 것과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 귀하 및 고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첨부파일(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내용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1. 고발인 (생략)
2. 위반내용 (생략)
3. 귀하의 위반소재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려 하니 2018.8.13. 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불법금융대응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오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은행 통장

금 용 감 독 원